



소방청
National Fire Agency 119

보도자료

힘을내라
대주정부는
힘을내라
대한민국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배포일시 | 2020.6.3.(수) 08:00 | 보도시점 | 2020.6.4.(목) 조간부터 [온라인 매체 6.3.(수) 12:00부터] |
| 담당과장 | 소방산업과장 이종인 | 연락처 | 044-205-7500 |
| 담당 | 소방위 노시환 | 연락처 | 044-205-7507 |
| 쪽수/붙임 | 2쪽/있음 | 대변인실 | 044-205-7016 |

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

- 소방시설 설계·감리 하도급 제한 등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개정 -

□ 소방청(청장 정문호)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*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.

* (현재) 일괄발주: 발주자 → 건설업체(하도급) → 전문소방업체(시공)

(개선) 분리발주: 발주자 → 전문소방업체(시공)

○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* 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

*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(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,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)

□ 소방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(300만원 이하)을 부과하도록 했다.

- 아울러,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.
-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.
 - 아울러,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이다.
 - 나아가,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·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.
-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(변경)신고 수리 간주제* 도입,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(3천만원 이하→2억원 이하) 등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.

*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
-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,
 -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.



붙임 1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개정 주요내용

□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(제21조제2항)

-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함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|
| · 신설 | ·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·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리도급 예외 · 위반자 300만원 이하 벌금 (※시행일: 공포 후 3개월) |

□ 소방시설시공·설계·감리 하도급 제한(제22조)

- 소방시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·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·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제한 | · 소방시설 설계, 시공, 감리 하도급 제한 · 위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착공(변경)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(제13조제3항,제4항)

- 착공(변경)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-|
| · 신설 | · 소방관서 착공(변경)신고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·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(※시행일: 공포 후 1개월) |

□ **감리자 지정(변경)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(제17조제4항,제5항)**

○ 감리자 지정(변경)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|--|
| · 신설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리자 지정(변경)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·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(※시행일: 공포 후 1개월) |

□ **과징금 상한액 조정(제10조제1항)**

○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 한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-|---|
| · 3천만원 이하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억원 이하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**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제9조제1항, 제40조 제1항)**

○ 시공능력평가 또는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, 설계·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자 과태료

| 현 행 | 개 선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공능력평가 또는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· 처벌기준 미비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공능력평가 또는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·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계·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· 처벌기준 미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계·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· 위반자 과태료 처분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(제8조제1항)

○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 금지

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·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 | ·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·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대여행위 금지 ·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, 행정처분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 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(제13조)

○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경미 한 변경사항은 완공검사(부분) 신청서에 포함 보고

| 현 행 | 개 선 |
|---|---|
| · 감리대상 :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· 감리 미대상 : 규정 미비 | · 감리대상 :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· 감리 미대상 :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 검사 신청서류에 포함 보고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개선(제17조제1항)

○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공사업자 만이 감리 가능

| 현 행 | 개 선 |
|---|---|
| ·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은 소방시설 설계업자도 소방시설 공사감리 가능 | ·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만이 감리 가능 (※시행일: 공포 후 1년) |

□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개선(제25조)

○ 소방시설공사 설계·감리의 대가 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적용

| 현 행 | 개 선 |
|---|---|
| · 소방시설공사 설계·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적용(임의규정) | · 소방시설공사 설계·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적용(강제규정) (※시행일: 공포 후 1개월) |

